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886호 2012. 5. 29(화)

# 포항시보

## ◀ 규 칙 ▶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567호) ..... 2

## ◀ 입법예고 ▶

-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2-207호) ..... 9
- 201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경영 제2011-2919호) ..... 35

##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2-41호)..... 36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12-42호)..... 38

회 람									
--------	--	--	--	--	--	--	--	--	--

**규 칙**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29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포항시 규칙 제567호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항” 을 “이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제1항” 을 “이란 제1호”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6조에 따라” 로 하고,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7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1월” “1개월” 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1인” 을 “1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에” 를 “「식품위생법」 또는 착한가격(물가안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로 하며, “단,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혼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를 “단,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혼용할 경우에는 제외하며, 중복감면을 받을 수 없다”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동조” 를 “같은 조” 로, “기타” “그 밖의” 로 하고 “다만, 추정조정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를 “다만, 추정조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3인” 을 “3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6월” 을 “6개월” 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매월” 을 “월”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달에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생략)</p> <p>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 제1항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p> <p>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p> <p>3. ~ 4. (생략)</p> <p><b>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b>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u>당해</u>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할 때, 건물소유자가 신청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p> <p>② ~ ③ (생략)</p>	<p><b>제1조(목적)</b>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p> <p>-----</p> <p>-----</p> <p><b>제2조(정의)</b> (현행과 같음)</p> <p>1. -----이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p> <p>2. -----이란 제1호 -----</p> <p>-----</p> <p>-----</p> <p>3. ~ 4. (현행과 같음)</p> <p><b>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b> ① ----- 제6조에 따라 -----</p> <p>-----</p> <p>-----</p> <p>----- <u>포항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10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b>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  ② ~ ⑥ (생략)</p>	<p><b>제10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b>  --- 제17조제1항에 따른-----  -----  ----- 해당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p>
<p><b>제18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b>  (생략)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정지·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p>	<p><b>제18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b>  (현행과 같음)  ② -----  -----  ----- 1개월 -----  -----  ③ ~ ⑤ (현행과 같음)</p>
<p><b>제2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b></p> <p>1. (생략)</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 3톤의 수도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p> <p>3.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월 30톤의 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되, 30톤 미만 사용업소는 해당요금을 감액한다. 단,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혼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p>	<p><b>제20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b></p> <p>1. (현행과 같음)</p> <p>2. -----  -----  ----- 1명 -----  -----  3. 「식품위생법」 또는 착한가격(물가 안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  -----  ----- 단,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혼용할 경우에는 제외하며, 중복감면을 받을 수 없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b>제25조(운반급수와 사용료)</b>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시설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5조(운반급수와 사용료)</b> ① ----- ----- -----<u>그 밖에</u>----- ----- -----</p>
<p>② (생 략)</p> <p><b>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동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b> ① (생 략)</p> <p>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기·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u>다만, 추정조정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u></p> <p>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 (또는 종업원수)·시설규모 기타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습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p> <p>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동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b>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같은 조</u>----- ----- -----<u>그 밖의</u>----- ----- -----<u>다만,</u> <u>추정조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u> <u>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u></p> <p>③ ----- -----<u>그 밖에</u>----- -----<u>3명</u>----- ----- -----</p> <p>④ ----- ----- -----<u>해당</u>----- ----- -----</p>

현행	개정안
<p><b>제29조(수도요금의 고지 및 독촉) ①</b> (생략)</p> <p>② 수도사용자가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b>제29조(수도요금의 고지 및 독촉) ①</b> (현행과 같음)</p> <p>② ----- -- <u>그 밖에</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3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b> (생략)</p> <p>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b>제3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b> (현행과 같음)</p> <p>② ----- 6개월 - ----- ----- --6개월----- -----</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34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 ②</b> (생략)</p> <p>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매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빗물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계량기는 <u>당해</u>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며 교체 또는 수리 한때에는 지체 없이 상수도사업소로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34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 ②</b> (현행과 같음)</p> <p>③ ----- -----월-----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해당</u> ----- ----- -----</p>

**1. 개정이유**

조례개정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착한 가격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대하여 월30톤의 사용량 요금감면(안 제20조)
- 계량기 검침 불가능한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추정인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26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207호

포항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포항시장 박승호

##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적용, 각종 신청서식 정리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치금 보증기간 지정
- 나. 관광시설 등에 대한 조경완화
- 다. 재래시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등
- 라. 공개공지 설치 세부기준, 용적율 및 높이제한 완화기준 규정
- 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변경

**3. 관련법령**

- 「건축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 참고사항**

- 엔지니어일 대가 노임기준
- 타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현황자료

**5. 조례(안) : 붙임**

**6. 입법예고 : 2012년 5월 24일 ~ 2012년 6월 18일(26일간)**

**7. 의견제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건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건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591~5, 팩스 054)270-3580, 이메일 kce1409@korea.kr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호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제4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지4호 식의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을 “3명”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시행규칙 제9조”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보증기간은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하거나,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예치금 예치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예치하고, 반환은 건축물사용 승인 시 반환하며,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1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5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16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제4항을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3미터

로 한다.

④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주거지역 : 3배
-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4배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며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 4.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벤치(긴 의자), 식수대,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
- 5.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의하여 식재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다만, 산출된 용적률은 해당지역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text{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 5\text{퍼센트}) \} / \text{대지면적}] \times \text{「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에 따른 용적률}$$

-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다만, 산출된 높이는 법 제60조의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text{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 5\text{퍼센트}) \} / \text{대지면적}] \times \text{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기준}$$

3.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제28조의2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건축과내 업무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제39조제4호와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2】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13조 관련)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1천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7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10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 2.5만제곱미터 미만	15시간
2.5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22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26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32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2. 수수료 지급기준

가.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산정식

엔지니어링대가(시간당) × 소요시간 × 현장조사 시 비율(100퍼센트) = 행수수료  
(천원미만 버림)

■ 포항시 건축 조례[별지 제1호서식]

### 적용의 완화 요청서

허가번호 (년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주 [ ] 설계자 [ ] 시공사 [ ] 공사감리자
-----	--

건축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계자 (공사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사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주변 의 대지 및 건축물·도시미관 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포항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건축 조례[별지 제2호서식]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서

신청인	사무소명	면허번호	
	성명	등록구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상지역	※해당 지역에 √를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포항시, [ ] 남구, [ ] 북구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포항시 건축 조례[별지 제3호서식]

### 건축심의 신청서

접수번호

건축위치

건축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내용

대지면적

m<sup>2</sup>

건축면적

m<sup>2</sup>

연면적

m<sup>2</sup>

층수

건폐율

%

건물  
용도

구조

용적률

%

건축종별

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

최고높이

m

심의신청내역

설 계 자

주소

사무소명

전화

성명

설  
비  
설  
계  
자

기계  
전기

주소

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

사무소명

전화

성명

주소

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

사무소명

전화

성명

상기 내용과 같이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장조사서
2. 건축심의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포항시 건축 조례[별지 제4호서식]

## 현장 조사서

대지위치							
건축주	성명(명칭)			주소			
용도지역 및 지구				건물용도			
건축면적	m <sup>2</sup>	건폐율	%	연면적	m <sup>2</sup>	용적율	%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격거리 : m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법적 : m, 계획 : m	
일조권 등을 위한 높이 제한	법적 : m, 계획 : m	
대지안의 공지 관계	법적 : m, 계획 : m	
인접 건축물 의관계	법적 : m, 계획 : m	
인접건물의 색채		
주차시설 계획		
조경시설 계획		
구조안전의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포항시 건축 조례(별지 제5호서식)

###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건축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 . .		
사용승인 예정일	. . .		
예치방법	<input type="checkbox"/> 현금 등		<input type="checkbox"/> 보증서
건축공사비	일금	원정 (₩ )	
예치금액	일금	원정 (₩ )	

「포항시 건축조례」 제1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공사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등)
------	----------------------------

###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증

예치방법	<input type="checkbox"/> 현금 등		<input type="checkbox"/> 보증서
예치금액	일금	원정 (₩ )	
예치자	성명	주소	

「포항시 건축조례」 제1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위와 같이 보관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

건축주 ( ) 귀하

■ 포항시 건축 조례[별지 제6호서식]

###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명칭)	주소	
허가일자 (허가번호)		사용승인일	
대지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합계	m <sup>2</sup>	용도	
공개공지면적		건축기준 완화내용	
공개공지 시설물현황			
공개공지 배치도			
감리사무소명		감리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제활용품)]

---

**전경사진**

---

---

**안내판사진**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적용의 완화)</b>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u>시장</u>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b>제3조(적용의 완화)</b>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 ----- -----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 ----- ----- -----</p>
<p><b>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b> ①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p>	<p><b>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b> ① 법 제6조에 따라----- ----- -----「건축법           시행령」(이하</p>

현 행	개 정
<p>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b>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b></p> <p>②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변경</p> <p>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p> <p>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 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p> <p>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p> <p>④ (생 략)</p>	<p>“영” 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 ----- -----</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5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b></p> <p>② 영 제5조제4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지4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1. ~ 10. (생 략)  <u>11. 공장건축물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을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허용</u></p> <p><b>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 략)</b>                      1. ~ 3. (생 략)                      4. <u>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한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공공용시설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u>                      ② <u>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 7. (생 략)                      8. <u>관광지, 골프장 등 기준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u>  <u>&lt;신 설&gt;</u></p> <p><b>제1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 ④ (생 략)</b>                      ⑤ <u>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2조</u></p>	<p>1. ~ 10.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b>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b>                      1. ~ 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② <u>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u></p> <p>1. ~ 7.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9.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u>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p> <p><b>제1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b>                      ⑤ <u>제1항부터제3항까지-----                      ----- 법 제42조</u></p>

현행	개정
<p>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p> <p><b>제26조(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b></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u>당해</u>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p> <p>3. (생략)</p> <p>② (생략)</p> <p>③ <u>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u> 대지안의 건축물에 <u>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u>저면도로의 반대측</u>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u>막다른 도로의 끝</u> 으로부터 <u>당해</u>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p> <p><b>제2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 ① (생략)</p> <p>② (생략)</p> <p>1. <u>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이하)의 높이로 할 것. 다만,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u></p>	<p>제2항 <u>에 따라</u> ----- ----- ----- -----</p> <p><b>제26조(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b></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해당</u>-----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법 제60조제3항에 따른</u>----- ----- ----- <u>해당</u> ----- ----- --</p> <p><b>제2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p><u>주거용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u></p> <p>2.(생 략) 가. (생 략) 나. <u>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u> 다. <u>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 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u> 라. <u>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 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의 경우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는 당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③ (생 략) ④ (생 략)</p>	<p>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u>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u>”란 3미터로 한다. ④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4배</p> <p>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b>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b></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5퍼센트</p> <p>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8퍼센트</p> <p>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10퍼센트</p> <p>③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p> <p>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의하여 식재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p> <p>3. 벤치</p> <p>4. 식수대</p> <p>5. 조형물 등</p>	<p><b>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해당 ----- ----- -----</p> <p>2. 해당 ----- ----- ----</p> <p>3. 해당 ----- ----- -----</p> <p>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p> <p>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p> <p>3.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며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p> <p>4. 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 벤치(긴 의자), 식수대,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p> <p>5.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의하여 식</p>

현 행	개 정
<p>〈신 설〉</p> <p>④ (생 략)</p> <p>1. <u>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u></p> <p>2. <u>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 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u></p> <p>〈신 설〉</p> <p>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와 대지사</p>	<p><u>재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6. <u>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1. <u>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다만, 산출된 용적률은 당해지역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u>  <math display="block">\frac{[1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text{대지면적}]}{\times \text{「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에 따른 용적률}}</math></p> <p>2. <u>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다만, 산출된 높이는 법 제60조의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u>  <math display="block">\frac{[1 + \{\text{공개공지등 면적} - (\text{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text{대지면적}] \times \text{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math></p> <p>3. <u>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u></p> <p>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  -----  -----  -----</p>



현 행	개 정																																														
<p><b>【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건축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th> <th style="width: 40%;">금 액(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200제곱미터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 9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타 2,10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 1,2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타 4,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2,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만제곱미터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00</td> </tr> </tbody> </table> <p>※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p>	건축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원)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900	기 타 2,100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1,200	기 타 4,500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12,000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22,500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45,000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90,000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180,000	30만제곱미터이상	360,000	<p><b>【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b></p> <p>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th> <th style="width: 40%;">검사대행 소요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30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60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60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천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7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만제곱미터 이상 ~ 2.5만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2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6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8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2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만제곱미터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8시간</td> </tr> </tbody> </table> <p>2. 수수료 지급기준  가.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0퍼센트</p> <p>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산정식 엔지니어링대가(시간당) × 소요시간 × 현장조사시 비율(100%) = 대행수수료(천원미만 버림)</p>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1천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7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10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 2.5만제곱미터 미만	15시간	2.5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22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26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32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건축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원)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900																																														
	기 타 2,100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1,200																																														
	기 타 4,500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12,000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22,500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45,000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90,000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180,000																																														
30만제곱미터이상	360,000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1천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7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10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 2.5만제곱미터 미만	15시간																																														
2.5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22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26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32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 업무대행 수수료 비교자료 조사현황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소요시간 (조사현황)	조례 적용시간 (안)	비고
200㎡ 미만	3~4시간	3시간	
330㎡ 미만	3~4시간	''	
495㎡ 미만	4시간	4시간	
660㎡ 미만	4~6시간	''	
660㎡ 이상 1천㎡ 미만	5~6시간	5시간	
1천㎡ 이상 2천㎡ 미만	5~6시간	6시간	
2천㎡ 이상 3천500㎡ 미만	6~10시간	7시간	
3천500㎡ 이상 5천㎡ 미만	6~10시간	''	
5천㎡ 이상 7천500㎡ 미만	8~14시간	10시간	
7천500㎡ 이상 1만㎡ 미만	8~14시간	''	
1만㎡ 이상 2만5천㎡ 미만	13~18시간	15시간	
2만5천㎡ 이상 5만㎡ 미만	13~22시간	''	
5만㎡ 이상 7만5천㎡ 미만	21~26시간	22시간	
7만5천㎡ 이상 10만㎡ 미만	24~28시간	''	
10만㎡ 이상 15만㎡ 미만	28~32시간	28시간	
15만㎡ 이상 20만㎡ 미만	28~35시간	''	
20만㎡ 이상 30만㎡ 미만	28~45시간	32시간	
30만㎡ 이상	32~53시간	38시간	

업무대행 수수료 비교자료 조사표

수원시		부천시		청주시		천안시	
규모(연면적 합계)	시간	건축물 연면적	시간	건축물 연면적	시간	건축물 연면적	시간
495㎡ 미만	4	660㎡ 미만	4	660㎡ 미만	4	330㎡ 미만	3
495㎡~1천㎡	5	660㎡~2천㎡	5	660㎡~2천㎡	5	660㎡~1천㎡	4
1천㎡~3천㎡	6	2천㎡~3천500㎡	7	2천㎡~3천500㎡	7	1천㎡~2천㎡	5
3천㎡~5천㎡	8	3천5백㎡~5천㎡	9	3천5백㎡~5천㎡	9	2천㎡~3천㎡	7
5천㎡~7천5백㎡	10	5천㎡~7천500㎡	11	5천㎡~7천500㎡	11	3천㎡~6천㎡	8
7천5백㎡~1만㎡	12	7천5백㎡~1만㎡	13	7천5백㎡~1만㎡	13	6천㎡~1만㎡	9
1만㎡~2만㎡	13	1만㎡~2만5천㎡	16	1만㎡~2만5천㎡	16	7천5백㎡~1만㎡	10
2만㎡~3만㎡	15	2만5천㎡~5만㎡	20	2만5천㎡~5만㎡	20	1만㎡~2만㎡	13
3만㎡~4만㎡	17	5만㎡~7만5천㎡	24	5만㎡~7만5천㎡	24	2만㎡~3만㎡	16
4만㎡~5만㎡	20	7만5천㎡~10만㎡	28	7만5천㎡~10만㎡	28	3만㎡~6만㎡	21
5만㎡~7만5천㎡	24	10만㎡~15만㎡	31	10만㎡~15만㎡	31	6만㎡~10만㎡	25
7만5천㎡~10만㎡	28	15만㎡~20만㎡	33	15만㎡~20만㎡	33	10만㎡~30만㎡	36
10만㎡~20만㎡	35	20만㎡~30만㎡	36	20만㎡~30만㎡	36	30만㎡ 이상	48
20만㎡~30만㎡	45	30만㎡ 이상	38	30만㎡ 이상	38		
30만㎡ 이상	53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성남시	
건축물 연면적	시간	건축물 연면적	시간	건축물 연면적	시간	건축물 연면적	시간
660㎡ 미만	4	660㎡ 미만	4	200㎡ 이하	4	2천㎡ 미만	6
660㎡~2천㎡	6	660㎡~2천㎡	6	660㎡ 이하	6	2천㎡~5천㎡	8
2천㎡~5천㎡	8	2천㎡~5천㎡	10	1천㎡ 이하	6	5천㎡~7천5백㎡	10
5천㎡~1만㎡	12	5천㎡~1만㎡	14	5천㎡ 이하	6	7천5백㎡~1만㎡	12
1만㎡~3만㎡	16	1만㎡~3만㎡	18	1만㎡ 이하	7.5	1만㎡~2만㎡	13
3만㎡~5만㎡	20	3만㎡~5만㎡	22	3만㎡ 이하	8.5	2만㎡~3만㎡	15
5만㎡~10만㎡	24	5만㎡~10만㎡	26	5만㎡ 이하	9	3만㎡~4만㎡	17
10만㎡~30만㎡	28	10만㎡~30만㎡	32	10만㎡ 이하	9.5	4만㎡~5만㎡	20
30만㎡ 이상	32	30만㎡ 이상	38	20만㎡ 이하	18	5만㎡~7만5천㎡	24
				30만㎡ 이하	18	7만5천㎡~10만㎡	28
				30만㎡ 이상	35	사전승인 대상	35

  

창원시		전주시	
건축물 연면적	시간	건축물 연면적	금액
660㎡ 미만	4	495㎡ 이하	10만
660㎡~2천㎡	5	495㎡~1천㎡	12만
2천㎡~5천㎡	6	1천㎡~3천㎡	15만
5천㎡~1만㎡	8	3천㎡~5천㎡	17만
1만㎡~3만㎡	16	5천㎡~1만㎡	20만
3만㎡~10만㎡	19	1만㎡ 이상	25만
10만㎡~30만㎡	30		
30만㎡ 이상	38		

  

※기타사항

- 직선보간법 적용 : 수원시
- 적용율 : 사용승인시 100% 적용, 허가시에는 대부분 10~20%적용함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기술사 노임 적용 2012년 330,190원 (1시간 41,000원 적용)

□ 참고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경영2011-2919호)

### 201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본 협회에서 실시한 제201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단위 : 원)

구 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기타
기술사	412,124	388,830	330,109
특급기술자	368,158	346,318	258,612
고급기술자	308,849	259,132	205,855
중급기술자	261,341	218,166	181,472
초급기술자	197,919	171,467	133,629
고급기능사	302,968	174,727	145,353
중급기능사	223,375	149,677	136,981
초급기능사	149,039	121,474	115,960

나 평균근무일수

구 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기타
평균근무일수	22.05일	22.11일	22.11일

상기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실근무일수에 인원

가중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치 임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엔지니어링협회→임금실태조사결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41호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89번지 일원의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구룡포 중·중합고등학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24일

포항시장 박승호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구룡포 중·중합고등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룡포 중·중합 고등학교	학교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89번지 일원	33,823	감) 3,322	30,501	경북고 제230호 (1984.12.08)	
변경		구룡포중학교 포항과학기술 고등학교	"	"	30,501	증) 560	31,061	"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변 경 사 유
0-59	면적변경	A=33,823m <sup>2</sup> → 30,501m <sup>2</sup> (감 3,322m <sup>2</sup> )	• 결정 당시 면적산정이 잘못되어 정정 코자 함.
0-59	교명변경	구룡포 중·중합고등학교 → 구룡포중학교,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 구룡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중·고 통합으로 적정규 모의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정 상화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룡포읍 중·고 통합으로 교명 변경
0-59	면적변경	A=30,501m <sup>2</sup> → 31,061m <sup>2</sup> (증 560m <sup>2</sup> )	• 구룡포읍 중·고등학교 통합으로 교사 동 전면 개축으로 학교결정면적 조정

3.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실음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시 고시 제2012-42호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포항시장 박승호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 중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체육시설
  - 명 칭 : 포항 송라제니스 컨트리클럽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48번지
  - 성 명
    - 당 초 : (주)홍익레저산업 대표이사 이상규
    - 변 경 : (주)홍익레저산업 공동관리인 임언재, 김명배
4. 사업계획 내용
  - 부지면적 : 1,008,872㎡
  - 건축면적 : 5,282.16㎡ (연면적 9,403.64㎡)
  - 사업기간
    - 당 초 : 2003.12.26 ~ 2012.5.25
    - 변 경 : 2003.12.26 ~ 2012.12.2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